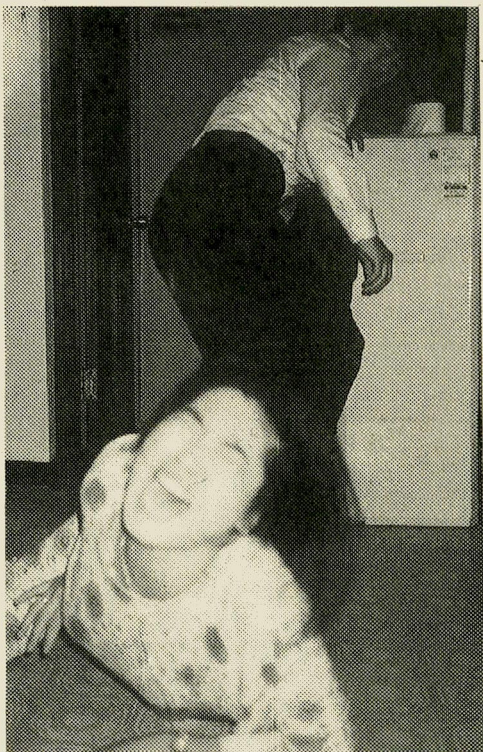


『남편 성폭행』 국내선도 심각

美 사건계기 재판심 매맞는 아내 절반이 상습피해 호소



우리나라의 경우 아내 구타 후 강제적인 성관계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잠재적인 부부내 강간문제가 심각하다. 사진은 영화 「굴레를 벗고서」의 한 장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데 격분, 잠든 남편의 성기를 흥기로 자른 미국 로리나 보비트여인(24·매니큐어리스트) 사건은 세계적으로 남편의 성폭력 문제를 새삼 제기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 즉 「강

아내나 남편의 거부(반항)가 어느정도였는가가 유죄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설명한다.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하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영국최고법원도 지난91년 아내를 강간한 남편에게 3년형을 선고함으로써 「부인의 성행위 거부권 및 남편에 의한 강간죄 성립」을 인정했고 같은해 프랑스법원 역시 술에 취해 부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한 남편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다」고 답했다.

「여성의 전화」의 구타당한 아내 면접상담에서도 35% 정도가 「폭행 직후 성관계가 정해진 과정」이라고 답한바 있다.

이에대해 「여성의 전화」 홍慶義간사는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대개 폭행후 아내를 달래는 수단이 성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아내들은 더 맞지 않기 위해 성관계를 맺는다고 답하지만 그런 경우를 강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드문 형편」이라고 말한다.

남편의 일방적인 성행위를 거절하면 남편이 다른 핑계로 못살게 구는 경우가 많아 결국 성행위에 응할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주부들이 의외로 많다고 여성문제상담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부부강간에 관해서는 작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시 여성단체 일각에서 법조항화 문제가 거론되다 「아직은 국민의식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다.

(鄭恩玲)

美 英 佛 “범죄” 처벌... 한국 아직 판례없어

간」이란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냐는 문제를 놓고 여성단체등에서 논란이 인 적도 있다.

작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에 참여하며 미국의 성폭력에 관한 법안을 살펴보았던 李鍾杰변호사(37)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부부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각자으로 간주한다」며 「이때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부부간 강간에 대한 고소나 판결사례는 단한건도 없지만 잠재된 부부강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지난 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아내의 경우 48%가 「남편이 때리 뒤 각